문화체육관광부

문화체육관광부

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수신 종교단체 대표
(경유)
제목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및 방역협조 요청

1. 관련
   가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(2021.8.6.)

2.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그간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감염 확산세가 다소 둔화되는 효과는 확인된 반면, **감소세로의 반전은 나타나지 않고 있어, 재확산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거리두기 단계(수도권: 4단계, 수도권 외 지역: 3단계)를 2주간 연장**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

   ○ 이와 함께 거리두기 개편(7.1.~)이후, 시행과정에서 확인된 방역조치 간 형평성 등 개선 필요성에 따라 **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수정·보완하여 정규수칙으로 반영**하여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.

<종교시설 관련 방역수칙 주요 변경사항>

<모임·행사>

■ (행사) 4단계: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행사라도 **숙박 동반 금지**

<다중이용시설: 종교시설>

구분	2, 3단계	4단계 변경 개선	비고
종교시설	▲(2단계) 전체 수용인원의 30%(두 칸 띄우기) ▲(3단계) 전체 수용인원의 20%(네 칸 띄우기)	▲전체 수용인원 기준 -100명 초과: 10%(최대 99명) -100명 이하: 최대 10명	비대면 종교활동 관련 사항은 현행과 같음

가. 적용기간: **2021. 8. 9.(월) 0시 ~ 2021. 8. 22.(일) 24시**

나. 적용지역: **수도권 및 수도권 외 14개 시·도***

* 부산광역시, 대구광역시, 광주광역시, 대전광역시, 울산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, 강원도, 충청북도, 충청남도, 전라북도, 전라남도, 경상북도, 경상남도, 제주특별자치도

다. 적용단계

○ 수도권: **거리두기 4단계**

○ 수도권 외 지역: **거리두기 3단계**

※ 본 조치(단계)보다 강화된 조치를 시행 중인 시·도 및 시·군·구는 해당 조치적용 유지

※ 주민 수 10만명 이하 시·군 지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단계조정 가능

1)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(1, 2, 3그룹, 기타시설, 고위험 사업장)

○ **대상시설(35종)**

- **1그룹**(3종): 유흥시설(유흥주점, 단란주점, 클럽(나이트), 감성주점, 헌팅포차), 콜라텍 · 무도장, 홀덤펍 · 홀덤게임장
- **2그룹**(5종): 식당 · 카페, 노래(코인)연습장, 목욕장업, 실내체육시설(고강도 유산소 운동 중심),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
- **3그룹**(11종): 학원 등, 영화관 · 공연장, 독서실 · 스터디카페, 결혼식장, 장례식장, 실내체육시설(비교적 중저강도 운동), 유원시설, 오락실 · 멀티방, 상점 · 마트 · 백화점(300㎡ 이상), 카지노(외국인 카지노 제외), PC방
- **기타시설**(14종): 스포츠경기(관람)장, 경륜장 · 경정장 · 경마장(각 국공립시설), 미술관 · 박물관 · 과학관, 실외체육시설(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포함), 숙박시설, 파티룸, 도서관, 키즈카페, 돌잔치, 전시회 · 박람회, 마사지업소 · 안마소, 국제회의 · 학술행사, 이미용업, **종교시설**
- **고위험 사업장**(2종): 콜센터, 물류센터

○ **법적근거**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 각호

○ **조치내용**: 방역지침 의무화

2) 직장근무(유연근무 등 활성화)

○ 3단계: 50명 이상 사업장(제조업 외) 시차 출퇴근제, 점심시간 시차제, 재택근무 20% 권고
○ 4단계: (제조업 외) 시차 출퇴근제, 점심시간 시차제, 재택근무 30% 권고

3. 위와 같은 방역조치의 이행을 위해, 귀 단체 소속의 종교시설 관리자 및 이용자가 방역지침 준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방역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안내하여 주시고, 방역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: 1.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부
2. 수도권 외 지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부
3.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부
4. 수도권 외 지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부
5. 기본방역수칙 1부. 끝.

문화체육관광부장관

행정사무관 **손문희** 종무1담당관 전결 2021.8.6. **강성태**

협조자 종무2담당관 **윤양수**

시행 종무1담당관-2804 (2021. 8. 6.) 접수

우 61485 세종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/ http://mcst.go.kr

전화번호 044-203-2317 팩스번호 044-203-3462- / smh0828@korea.kr / 대국민 공개

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